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3-30

수 원 지 방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5구합6565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
원 고	주식회사 [redacted]
피 고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변 론 종 결	2015. 11. 24.
판 결 선 고	2016. 2. 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4. 10. 16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,532,380원, 농어촌특별세 1,153,220원, 등록세 11,532,380원, 지방교육세 2,120,580원 합계 26,338,560원(가산세 포함, 이하 같다)의 지방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3-30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화장품 등의 제조·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10. 12. 14. [redacted]시 [redacted]구 [redacted]동 146-8 B동 지하 103호 및 같은 동 지하 104호(이하 위 2개 호실을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, 이 사건 부동산이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 '산업집적법'이라 한다)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[redacted]도 도세 감면조례(2011. 12. 26. [redacted]도조례 제42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조례'라고만 한다) 제7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.

나.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[redacted](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, 2014. 10. 16. 조례 제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11,532,380원, 농어촌특별세 1,153,220원, 등록세 11,532,380원, 지방교육세 2,120,580원을 각 부과·고지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다.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. 11. 19.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. 5. 27.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와 소외 회사는 그 업종이 같을 뿐 아니라 동일한 대표이사에 의하여 운영되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3-30

있으므로,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나. 관계 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1)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서 '제조업, 지식기반산업, 정보통신산업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'(제1호) 및 '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'(제2호)을 규정하고 있고, 조례 제7조 제2항은 "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. 다만,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,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(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)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3-30

2)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는 2010. 12. 14.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아 이를 취득한 사실, 원고는 2014. 3. 1.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, 차임 월 2백만 원, 임대차기간 2014. 5. 1.부터 2019. 4. 31.까지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4. 5. 1.경 소외 회사에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, 원고와 소외 회사는 법인등기부상 그 대표이사가 같고 동일·유사한 업종(화장품 등 제조·판매업)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나, 법인등록번호(① 원고 : 110111-1980089, ② 소외 회사 : 135111-0079131), 본점소재지[① 원고 : [redacted]시 [redacted]구 [redacted]로45번길 14, 비-109호([redacted]동, [redacted]밸리 2차 비동), ② 소외 회사 : [redacted]시 [redacted]구 [redacted]로45번길 14, 비-103호, 비-104호([redacted]동, [redacted]밸리 2차 비동)], 회사성립연월일(① 원고 : 2000. 5. 26., ② 소외 회사 : 2006. 2. 1.)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 및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10. 12. 14.부터 5년 이내인 2014. 5. 1.경 그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인 소외 회사에 위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여 준 것은 조례 제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인 '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'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,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3-30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오민석

판사 김선아

판사 이광헌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3-30

관계 법령

[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]

제2조(정의)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3. "지식산업센터"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,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제28조의5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

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

1. 제조업, 지식기반산업, 정보통신산업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

2.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

[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(2011. 12. 26. 경기도조례 제42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]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4조에 따라 경기도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7조(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)

② 중소기업자가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. 다만,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 끝.